
**대전 연속지구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2017. 8



대전광역시 대덕구

목 차

제1장 계획의 목적 및 개요	1
1.1 계획의 목적	2
1.2 계획의 개요	2
제2장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	9
2.1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10
2.2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	10
제3장 대안의 설정	13
3.1 대안의 선정	14
3.2 대안의 비교·검토	15
제4장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17
4.1 실시근거	18
4.2 전략환경영향평가협의회 개요	18
4.3 협의회 심의의견	19

제1장

계획의 목적 및 개요

차 례

1.1 계획의 목적

1.2 계획의 개요

제1장 계획의 목적 및 개요

1.1 계획의 목적

- 대덕구는 도시성장이 정체되어 산업시설의 노후와 더불어 주거환경의 질적 저하, 교통 문제, 교육·문화 환경의 취약 등으로 도시차원의 발전 격차가 심화되고 있으며, 남측에 편중된 대덕구 현 청사는 시설이 노후하고 협소하여 신축 또는 증·개축이 필요한 실정임.
- 본 대상지는 대전도시기본계획 상 시가화예정용지로 기 지정된 지역이며, 남·북으로 양분된 생활권을 연계할 수 있는 최적의 입지 지역임.
- 따라서, 지역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 생활권간 연계성 확보, 행정서비스의 질적 개선 및 지역적 형평성 확보 등을 위하여 연속동 일원에 대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이 필요함에 따라 개발제한 구역 해제를 추진하고자 함.

1.2 계획의 개요

가.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실시근거

1) 전략환경영향평가

- 본 계획은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별표2] 2. 개발기본계획 “가. 도시의 개발” 에 해당되어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함.

<표 1.2-1>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

구 분	개발기본계획의 종류	협의요청시기
가. 도시의 개발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또는 시·도 지사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2) 환경영향평가협의회

- 본 협의회는 환경영향평가법 제8조, 동법시행령 제3조 내지 제6조에 의거하여 실시함.

<표 1.2-2>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

구 분	법적근거 및 구성방법
법적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영향평가법 제8조(환경영향평가협의회) ◦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 제3조 내지 제6조
구성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협의대상(사업계획면적이 6만제곱미터 미만인 개발기본계획은 협의회 구성제외 가능)
역 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서 초안을 작성하기 전에 대안의 종류, 중점검토항목, 항목별 세부 내용 및 검토방법 등을 심의하여 결정 ◦ 대상계획 또는 사업의 유형 및 특성, 입지여건 및 환경특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
구성주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부장관, 계획 수립기관의 장, 계획 또는 사업에 대하여 승인 등을 하는 기관의 장 및 승인 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
구성시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또는 사업의 입안·수립 및 승인 등의 전 단계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 또는 환경영향평가를 시작하는 때
구성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인 이내(위원장 1인 포함)

나 계획의 추진경위 및 향후계획

- 2004. 12. 17 : 2020년 대전권 광역도시계획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의결
-조정가능지역 : 대덕구 회덕1동, 법2동 일원
- 2005. 01. 13 : 2020년 대전권 광역도시계획 수립
- 2009. 10. 23 : 개발행위허가제한 고시
- 2009. 12. 31 : 2020년 대전도시기본계획(변경) 고시
-권역별 시가화예정용지 확보(신탄진 및 송촌생활권)
- 2010. 01. 29 : 2020년 대전권 광역도시계획(변경) 수립 공고
-시·도별 개발제한구역 해제가능 총량 배분 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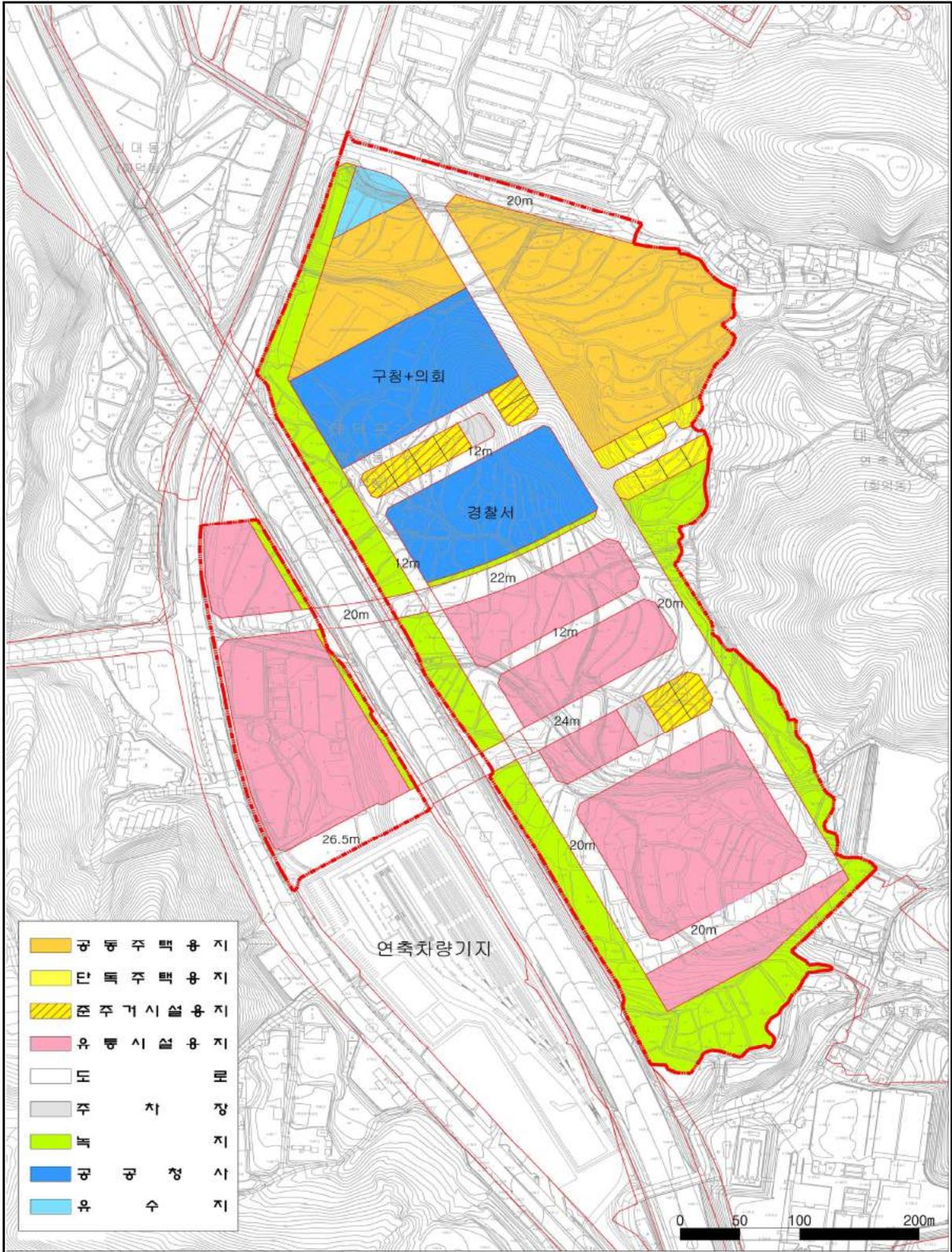
- 2010. 03. 25 : 연속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에 대한 대덕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 2010. 04. 05 : 문화재지표조사 협의완료
- 2010. 05. 18 : 도시개발구역 지정요청(구→시)
- 2010. 08. 05 : 개발제한구역 해제절차 선행 및 재검토 회신(시→구)
- 2014. 10. 17 : 개발행위허가제한 해제고시
- 2015. 05. 06 : 개발제한구역 규제완화 발표 / 국토교통부
-30만㎡이하의 GB해제 권한 지방이양 / 2016. 03. 30 시행령개정
- 2015. 09. 03 : 개발제한구역 해제용역 발주(설계)
- 2016. 07. 03 : 연속지구 도시개발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용역 발주(환경)
- 2017. 07 :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회 구성 및 협의의뢰(예정)
- 2017. 08 :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고(예정)
- 2017. 09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제출, 주민공람 및 의견수렴(예정)

다. 계획의 내용

- 1) 계획명 : 대전 연속지구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
- 2) 사업시행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 3) 승인기관명 : 대전광역시
- 4) 사업기간 : 2017년 ~ 2021년
- 5) 사업비 : 98,196백만원
- 6) 계획위치 및 면적
 - 위치 : 대전광역시 대덕구 연속동 78-2번지 일원
 - 면적 : 247,001㎡
 - 개발제한구역 해제 요청면적 : 237,393㎡

<표 1.2-3> 토지이용계획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계	247,001	100.0	개발제한구역 해제면적 : 237,393㎡
주 거 용 지	49,780	20.2	
단 독 주 택 용 지	3,540	1.4	
공 동 주 택 용 지	40,948	16.6	
준 주 거 시 설 용 지	5,292	2.2	
유 통 시 설 용 지	69,184	28.0	
도 시 기 반 시 설 용 지	128,037	51.8	
도 로	55,752	22.6	
주 차 장	1,528	0.6	노외주차장 2개소
녹 지	40,106	16.2	연결녹지 1개소, 완충녹지 5개소
유 수 지	2,049	0.8	
공 공 청 사	28,602	11.6	구청·구의회 : 15,300㎡ 경찰서 : 13,302㎡



(그림 1-2) 토지이용 계획도

제2장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

차 례

2.1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2.2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

제2장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

2.1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 환경영향평가법 제8조(환경영향평가협의회) 및 동법시행령 제4조(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구성), 제5조(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운영) 규정에 따라 사업의 유형 및 특성, 입지여건 및 환경특성 등을 고려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범위 등을 결정하였다.

2.2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

가. 환경영향요소 추출

- 본 사업시행시 환경영향요소는 공사단계에서의 토공작업 및 운영단계에서의 환경영향 인자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추출하였음.

<표 2.2-1> 환경영향요소 추출

공사단계	운영단계
생태계 훼손	건축물 입지
토공작업 및 토사이동	오수 발생
자연지형의 변화	폐기물 발생
토사유출 및 부유물질 농도증가	소음·진동 발생
폐유발생	
지장물 철거	
건축물 공사	
작업인부 투입	
공사장비 투입	

나. 평가항목 설정

- 금회 기본계획의 환경영향검토를 위한 평가항목은 현장답사 등을 통해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의 지역특성을 파악한 후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1에 제시된 환경영향 평가 등의 분야별 세부평가항목”을 기준으로 선정하였다.

<표 2.2-2> 평가항목의 종류

분 야		평가항목
자연환경의 보전	생물다양성·서식지의 보전	동·식물상, 자연환경자산
	지형 및 생태축의 보전	지형·지질
	주변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경관
	수환경의 보전	수질, 해양환경, 수리·수문
생활환경의 안정성	환경기준 부합성	기상, 대기, 악취, 토양, 소음·진동
	환경기초시설의 적정성	환경기초시설
	자원·에너지 순환의 효율성	친환경적자원순환
사회·경제 환경과의 조화성	환경친화적 토지이용	토지이용

<표 2.2-3> 평가항목의 설정

평가항목	선정(안)	선정사유 및 제외사유
동·식물상	○	◦사업시행으로 인한 육상 및 육수생태계 변화
자연환경자산	○	◦계획지역의 자연환경자산 현황 파악
지형·지질	○	◦공사시 토공량 발생으로 인한 지형변화
경 관	○	◦사업시행으로 인한 경관의 변화
수 질	○	◦공사시 토사유출, 운영시 오수발생 등 영향예상
해양환경	×	◦본 사업으로 인한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없음.
수리·수문	×	◦본 사업으로 인한 수리수문에 미치는 영향없음.
기 상	○	◦계획지역의 국지적 기상파악
대 기 질	○	◦공사시 장비가동, 운영시 연료사용 등 인접지역의 영향파악
악 취	×	◦본 사업으로 인한 악취에 미치는 영향없음.
토 양	○	◦계획지역 토양에 미치는 영향 파악
소음·진동	○	◦공사시 장비가동, 운영시 교통소음 등 인접지역의 영향파악
환경기초시설	×	◦“지역개황” 편 환경기초시설 항목에 제시
친환경적 자원순환	○	◦계획지역의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파악
토지이용	○	◦사업계획으로 인한 토지이용 변화

다. 평가범위 및 방법 설정

- 본 계획시행으로 인한 환경영향을 정량적 및 정성적으로 예측하기 위하여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에 평가항목별 환경영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상지역을 설정하였음.

<표 2.2-4> 평가범위 및 방법 설정

평가항목	평가범위	평가방법	선정사유
동·식물상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현지, 기존자료조사	◦공사시 육상 및 육수동·식물상에 영향발생
자연환경 자 산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현지, 기존자료조사	◦사업시행으로 주변 자연환경자산에 미치는 영향
지형·지질	◦계획지구	◦현지, 기존자료조사	◦공사시 토공발생으로 인한 지형 변화
경 관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현지, 기존자료조사	◦사업시행으로 인한 경관변화
수 질	◦계획지구 및 하류수계	◦현지, 기존자료조사	◦공사시 부유토사, 운영시 오수로 인한 영향발생
기 상	◦계획지구 인접 기상청	◦기존자료조사	◦기초자료로 활용
대 기 질	◦계획지구 주변지역	◦현지, 기존자료조사	◦공사시 공사장비 가동, 운영시 연료사용·교통에 의한 대기오염 물질 발생
토 양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기존자료조사	◦공사시 공사장비 가동에 의한 토양오염물질 발생
소음·진동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현지, 기존자료조사	◦공사시 장비 투입, 운영시 교통량에 따른 주변 정온시설에 영향 발생
친환경적 자원순환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기존자료조사	◦공사시 건설폐기물, 폐유, 생활 폐기물, 운영시 생활폐기물 등 발생
토지이용	◦계획지구	◦기존자료조사	◦사업시행으로 인한 토지이용상의 변화

제3장

대안의 설정

차 례

3.1 대안의 선정

3.2 대안의 비교·검토

제3장 대안의 설정

3.1 대안의 선정

- 대안을 선정할 때는 계획의 목표와 방향, 추진전략과 방법, 수요와 공급, 위치와 시기, 토지이용 등에 대하여 설정 가능한 대안을 No Action을 포함하여 설정하여 제시하여야 함.
- 금회 계획의 특성을 고려하여 계획비교, 수단방법을 대안으로 선정하여 이에 대한 내용을 비교·검토하였음.

<표 3.1-1> 대안의 선정방법

대안종류	선 정 방 법	선 정
계획비교	○ 행정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을 경우 발생 가능한 상황(No action)과 계획을 수립했을 때 발생 가능한 상황을 대안으로 선정	◎
수단방법	○ 행정목적 달성을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대안으로 선정	◎
수요공급	○ 개발에 관한 수요·공급을 결정하는 계획의 경우 수요·공급량(규모)에 대한 조건을 변경하여 대안으로 선정	
입 지	○ 개발 대상 입지를 결정하는 계획의 경우 대상지역 또는 그 경계의 일부를 조정하여 대안으로 선정	
시기순서	○ 개발 시기 및 순서를 결정하는 계획의 경우 시행 시기 및 진행순서(예 : 연차별 개발) 등의 조건을 변경하여 대안으로 선정	
기 타	○ 상기 대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대안 또는 기타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계획의 성격과 내용을 고려할 때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대안	

3.2 대안의 비교·검토

가. 계획비교

- 금회 사업은 주거환경의 질적 향상, 교통문제, 교육·문화 환경의 향상을 위한 행정계획으로, 우선 계획을 수립(Action) 하였을 때와 수립하지 않았을 경우(No action)를 대안으로 선정하여 비교·검토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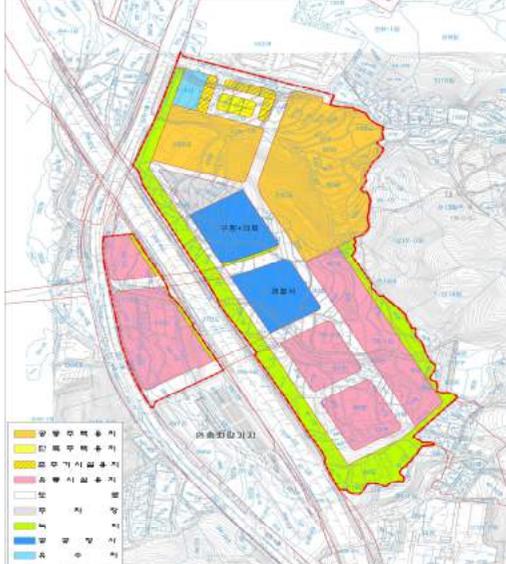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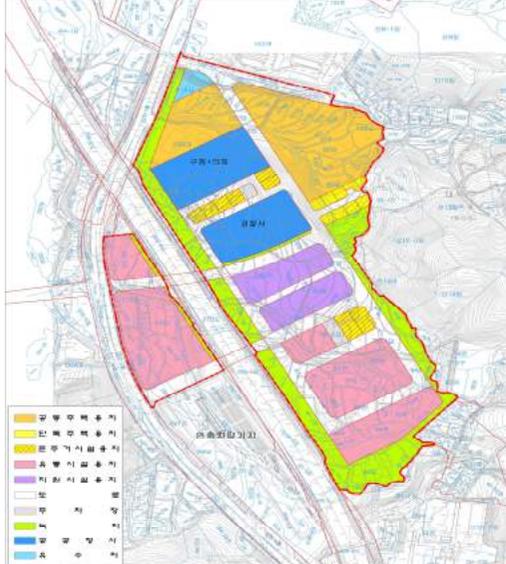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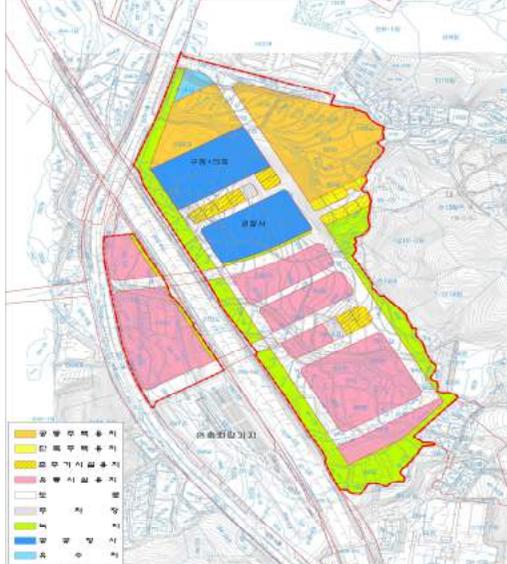
<표 3.2-1> 계획비교 대안의 비교·검토

구분	대 안 1 (Action)	대 안 2 (No action)
계획수립여부	계획 수립시	계획 미수립시
내용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 공공 시설의 지역편중으로 인한 구민 불편사항 해소로 행정서비스를 제고하며, 쾌적하고 친환경적인 주거공간 조성으로 주민 삶의 질 향상 등에 따른 성장동력기반 확보	◦지역적 불균형발전, 공공시설의 지역편중으로 인한 구민 불편 등 현재 주민 삶을 유지함.
장점	◦지역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 ◦생활권간 연계성 확보 ◦행정서비스의 질적 개선 및 지역적 형평성 확보	◦현재의 지구지역을 그대로 유지하여 개발사업에 의한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방지할 수 있음.
단점	◦공사시시 주변 환경에 대한 일시적인 영향발생은 불가피함.	◦교육환경의 질적 저하 유지 ◦교통, 교육 및 문화환경의 취약
선정	○	
◦본 계획의 목적은 지역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 생활권간 연계성 확보, 행정서비스의 질적 개선 및 지역적 형평성 확보 등을 위하여 연축동 일원에 대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이 필요함에 따라 개발제한 구역 해제를 추진하고자 함.		

나. 수단방법

◦ 금회 계획의 목적 달성을 위한 방법으로 시설물 배치 등의 대안을 선정하여 검토한 결과 대안 3이 유리한 것으로 판단됨.

<표 4.2-2> 수단방법 대안의 비교·검토

구분	대안 1	대안 2	대안 3
토지 이용 계획			
장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청사가 집적화되어 있고 경찰서의 진출입로가 국도17호선, 대덕특구 동측 진입도로 2군데와 연결되어 있어 시설 효율성이 우수함. ◦ 공공청사 및 물류시설용지의 부지모형이 타 안과 대비하여 정형화되어 있어 건축배치가 용이함. ◦ 공동주택용지를 충분히 확보하여 다양한 면적의 공동주택 입주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안과 대비하여 이주자택지를 충분히 확보하였음. ◦ 지원시설용지를 추가하여 시설의 다양성을 확보함. ◦ 준주거시설용지를 이격하여 이용에 편의를 도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안과 대비하여 이주자 택지를 충분히 확보하였음. ◦ 유통시설용지 수요를 고려한 면적을 확보하였음. ◦ 준주거시설용지를 이격하여 이용에 편의를 도모
단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차장 부지모형이 삼각형으로 부지활용이 불편함. ◦ 물류시설용지와 주거용지가 근접하여 공간적 배치의 효율성이 떨어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청사 및 남측 준주거, 주차장의 세장비가 나빠 건축배치가 용이하지 않음. ◦ 타 토지이용계획(안)에 비하여 물류시설용지의 확보 비율이 적음. ◦ 이주자 택지는 충분히 확보하였으나 통학거리가 떨어져 있음(와동초등학교와 약 700m).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청사 및 남측 준주거, 주차장의 세장비가 나빠 건축배치가 용이하지 않음. ◦ 이주자 택지는 충분히 확보하였으나 통학거리가 떨어져 있음(와동초등학교와 약 700m).
선정			●

제4장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차 례

- 4.1 실시근거
- 4.2 전략환경영향평가협의회 개요
- 4.3 협의회 심의의견

제4장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4.1 실시근거

- 환경영향평가법 제8조(환경영향평가협의회) 및 동법시행령 제4조(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 제5조(환경영향평가협의회 운영) 규정에 따라 사업의 유형 및 특성, 입지여건 및 환경특성 등을 고려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범위 등을 결정하였다.

4.2 전략환경영향평가협의회 개요

- 주 관 :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 일 시 : 2017년 07월 27일~2017년 08월 16일
- 개최방식 : 서면심의
- 구성인원 : 위원장 포함 총 10인

<표 4.2-1>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위원명단

구 분	소 속	직 위	성 명	비 고
위원장	대덕구청 안전도시국	국장	박현대	소속공무원
위 원	대덕구청 도시과	과장	문성운	소속공무원
	대덕구청 환경과	과장	양당석	소속공무원
	환경부 국토환경평가과	사무관	정우용	소속공무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단장	김경호	민간전문가
	금강유역환경청	주무관	정은정	소속공무원
	청주대학교	교수	김종우	민간전문가
	한밭대학교	교수	장철현	민간전문가
	대전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고은아	시민단체
	회덕동 주민	통장	조순태	주민대표

4.3 협의회 심의의견

- 대덕구청 안전도시국 (위원장 박현대)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통보서

(대전 연축지구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 전략환경영향평가)

총괄의견

- 본 계획은 협의회 의견 충분히 반영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를 작성하여야 함.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

1. 대상지역의 설정
 - 별도의견 없음.
2. 토지이용 구상안
 -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변경은 관련법과 조례 등에 부합되고, 주변 환경여건을 고려하여 수립하여야 함.
3. 대안
 - 별도의견 없음.
4. 평가항목범위·방법 등
 -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에 제시된 평가항목에 대하여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을 통해 검토하고, 이를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반영하여야 함.
5.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해제계획으로 주민재산권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주민의견이 충분히 수렴될 수 있도록 홍보하여야 함.
6. 기타
 - 본 계획으로 인하여 주민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상되는 환경영향 등을 검토하고, 그에 대한 저감방안을 수립·제시하여야 함.

2017년 8월

심의의원 **박 현대** 인!

◦ 대덕구청 도시과 (위원 문성운)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통보서

(대전 연축지구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 전략환경영향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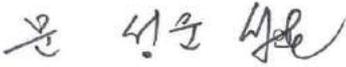
총괄의견

- 환경보전과 개발에 미치는 영향범위를 고려하여 충분한 범위를 설정하여야 하며, 관련계획 및 기준에 부합하게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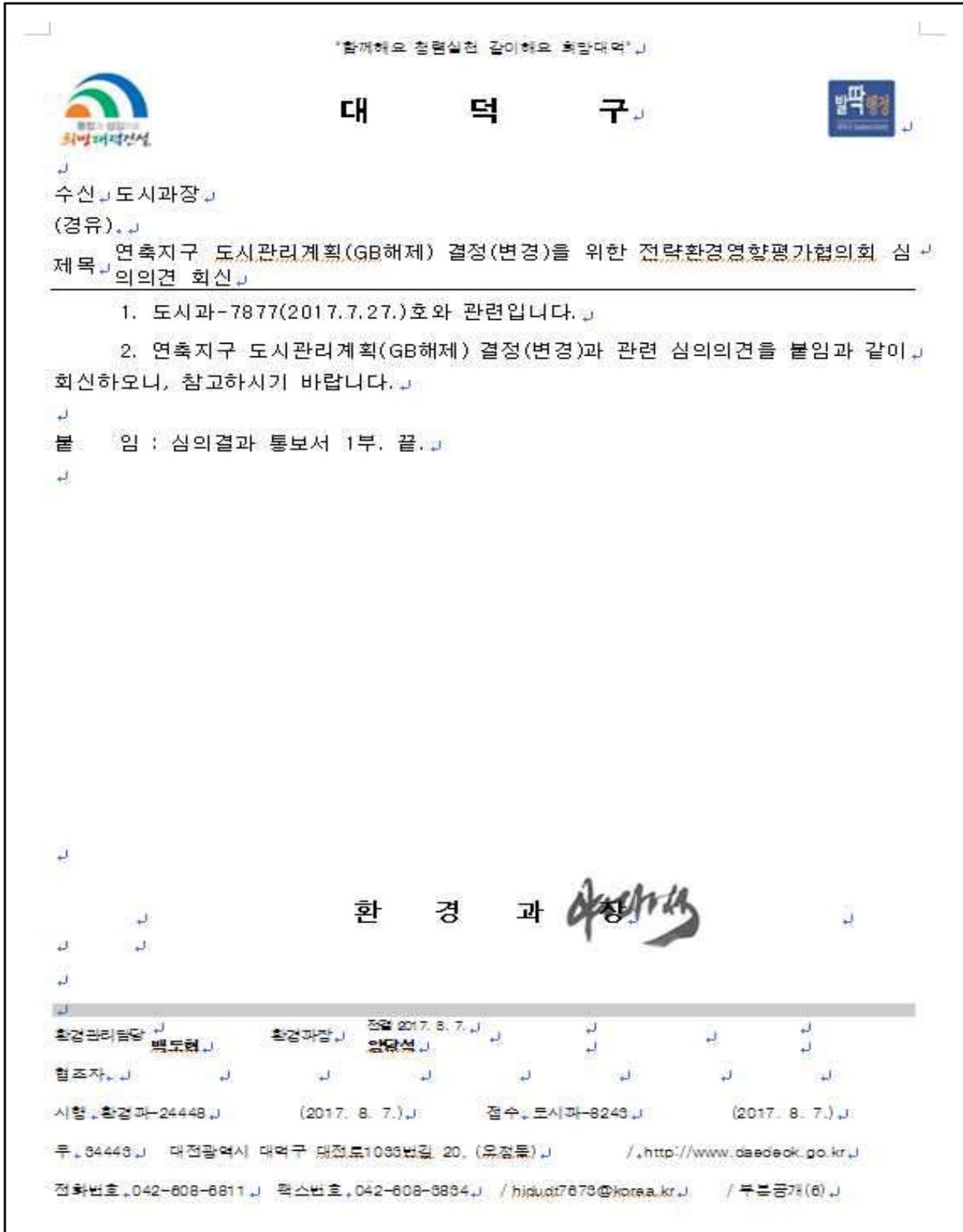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

1. 대상지역의 설정
 - 환경보전과 개발에 미치는 영향범위를 고려하여 충분한 범위를 설정하여야 함.
2. 토지이용 구상안
 - 관련 계획 및 기준에 부합하게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3. 대안
 - 의견없음.
4. 평가항목범위·방법 등
 - 평가항목별 영향권 범위설정은 근거 또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하며, 사업추진으로 인한 영향예측 및 저감방안을 검토하여 제시하여야 함.
5.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 관련법에 의한 절차를 준수하기 바라며, 평가대상 지역주민과 이해당사자 등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민원 등의 발생을 최소화하고, 제시된 의견은 계획수립시 적극 반영하여야 함.
6. 기타
 -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에 분포하는 동·식물상에 대한 현지조사, 문헌조사 결과를 토대로 사업시행에 따른 환경영향을 면밀히 예측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저감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2017년 8월

심의의원 

◦ 대덕구청 환경과 (위원 양당석)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통보서

(대전 연속지구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 전략환경영향평가)

□ 총괄의견

-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 등의 반영으로 효율적인 토지이용과 체계적인 관리가 될 수 있는 방안으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공사시 발생하는 제반사항에 대해 저감대책을 수립하고,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여야 함.

□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

1. 대상지역의 설정

- 환경보전 및 생활환경(대기질, 소음진동, 수질 등)에 미치는 영향범위를 고려하여 충분한 범위를 설정하여야 함.

2. 토지이용 구상안

-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 등의 반영으로 효율적인 토지이용과 체계적인 관리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3. 대안

- 없음.

4. 평가항목·범위·방법 등

- 평가서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제2016-131호, 2016.7.8.)에 따라 작성되어야 함.

5.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 영향이 예상되는 주변 지역 등에 거주하는 주민 및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사전에 의견수렴계획을 적극 홍보하여야 함.

6. 기타

- 공사시 발생하는 제반사항(소음진동, 비산먼지, 토사유출 등)에 대해 저감대책을 수립하고,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함.

2017년 8월

심의의원 양 당 석 인

◦ 환경부 국토환경평가과 (위원 정우영)



환 경 부

수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도시과장)

(경유)

제목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의견 알림(대전 연속지구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1. 도시과-8163('17.8.3.)호와 관련입니다.

2. 대전 연속지구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의견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붙임 : 심의의견서 1부. 끝.

환 경 부 장 관



환경사무관 정우영 과장 전결 2017. 8. 14.
유승광

협조자

시행 국토환경평가과-1588 (2017. 8. 14.) 접수 도시과-8527 (2017. 8. 15.)

우 30064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환경부 국토환경평가과 / <http://me.go.kr>

전화번호 044-201-7293 팩스번호 044-201-7304 / envimt@korea.kr / 비공개(5)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의견

(대전 연축지구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

□ 총괄의견

-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환경보전계획 등 본 계획과 관련된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을 제시하고 동 계획과의 연계성을 중점 검토하여야 함
- 전략환경영향평가서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1 제1호나목에 제시된 체계로 작성하여야 함

□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

1. 토지이용 구상안

- 생태자연도 2등급지역, 개발제한구역 환경평가등급 1·2등급지역은 제척하거나 보전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공공주택용지는 경부고속도로 및 국도17호선의 소음영향이 최소화 되도록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2. 대안

- 사업대상지가 가지고 있는 입지 특성과 대덕구 도시개발 현황 등을 고려하여 본 개발계획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개발제한구역 외 지역 등 추가 입지 대안을 선정하여 본 사업대상지의 입지와 비교·검토한 후 최적의 대안을 선정하여야 함

3.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 개발계획이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환경보전계획 등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부합성 및 연계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구체적으로 제시
- 사업시행에 따른 영향예측을 할 수 있는 기초자료 제시(인구, 상·하수도처리 계획, 전력공급계획 등)
- 대기 및 수질에 대하여 인근 자동측정망 자료를 조사(10년간)하고 현지측정 자료와 비교·제시
- 동·식물상 조사는 문헌조사, 현지조사 외 지역 실정에 밝은 주민,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탐문조사를 병행하고 탐문조사 결과 중요 종에 대하여는 현지조사 시 확인
- 동·식물상의 조사시기는 동·식물의 출현, 생육 등의 특성을 충분히 파악 할 수 있도록 설정
- 사업지구 인근의 산업단지, 공장, 축사 등 악취발생원에 의한 악취 영향 예측
- 대기질은 사업지구 경계로 1km, 소음·진동은 500m로 영향예측 범위를 확대

4.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평가서 초안 요약서를 작성하여 평가서 초안과 함께 비치하고 설명회 개최 등 지역주민들에게 적극적인 의견수렴 실시

5. 기타

- 동 사업의 목적에 맞는 적정수요를 산정하여 개발제한구역 해제 면적을 최소화

2017. 8. .

심의위원 환경부 국토환경평가과 환경사무관 정 우 용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위원 김경호)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통보서

(대전 연축지구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 전략환경영향평가)

□ 총괄 의견

- 도시관리계획과 관련된 상위계획과의 일관성 및 관련계획과의 연계의 적정성 검토결과를 반영하여 도시관리계획 예정구역 선정사유, 선정기준 등을 명확히 제시하고 선정(안)을 기초로 영향예측 실시

□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

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 의견없음
2. 토지이용 구상안
 - 주거, 유통, 도시기반시설용지의 경계에는 녹지를 설치하는 방안과, 주거시설 주민과 공공청사와 유통시설 종사자를 위한 단지내 공원 설치계획을 최대한 기존지형 활용하여 설치하는 계획 수립
 - 사업지구를 권봉하는 경부고속도로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주거, 유통, 도시기반시설에 미치는 영향을 발생원, 이동경로, 수음경로로 구분, 예측평가하여 지역별로 환경기준을 유지할 수 있는 토지이용 계획 수정보완
3. 대안
 - 의견없음
4. 평가 항목별위·방법 등
 - 온실가스 평가항목으로 선정
 - 공사시 장비운영, 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영향 예측 및 저감방안 마련 필요
5.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 환경영향평가법령에 따라 주민, 관계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설명회, 공청회 등의 절차를 준수하는 등 적극적 주민의견 수렴
6. 기 타(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 타당성 위주로 작성)
 - 환경보전계획, 도시계획 등과 연계성, 정합성 검토, 개발제한구역 해체에 따른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 최소화 방안, 수질오염총량관리 적합 여부 등 검토 제시

2017. 8. .

심의위원 김경호 (김경호인)

◦ 금강유역환경청 환경평가과 (위원 정은정)



환경부

금강유역환경청

수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도시과장)

(경유)

제목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의견 알림[대전 연속지구 개발제한구역 해제]

1. 도시과-7877(2017. 7. 27.)호 관련입니다.

2. 귀 기관에서 요청한 「연속지구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의견을 보내드리니,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심의의견 1부. 끝.

금강유역환경청장



주무관	정은정	과장	전결 2017. 8. 11.
협조자			정근채
시행	환경평가과-6073	(2017. 8. 11.)	접수 도시과-8532 (2017. 8. 16.)
우	34142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417 (구성동, 금강유역환경청)	/ http://www.me.go.kr/gg/
전화번호	042-865-0756	팩스번호 042-865-0759	/ ceun@korea.kr / 비공개(5)

전략환경영향평가준비서 서면심의 의견서

< 사 업 개 요 >

- 사 업 명 : 대전 연축지구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
- 위 치 : 대전광역시 대덕구 연축동 78-2번지 일원
- 면 적 : 237,393㎡
- 승인기관 : 대전광역시

I. 총괄의견

1.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의 개발방향, 전략에 부합하도록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2. 계획의 적정성, 입지의 타당성 등을 판단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계획과 관련자료를 제시하여야 함.

II.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

1.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 주변 시설과의 이격거리 등 현황파악이 어려우나 공동주택 등 다수의 시설이 분포하고 있는 바, 비산먼지 및 소음진동으로 인하여 시설에 피해가 없도록 대상지역을 최대한 확대하여야 함.

2. 토지이용 구성안

- 계획지구가 경부고속도로, 국도17호선으로 둘러싸여 있거나 연결하고 있어 운영 시 소음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바, 공동주택·단독주택 등 정온시설의 소음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토지이용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생태면적률 적용지침(환경부, 2016.7)」에 따라 목표생태면적률을 설정하고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3. 대 안

- 계획지구 외에 다수의 입지대안을 비교·검토하여 최적의 대안을 선정하고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함.

4. 평가항목 및 범위 등

- 계획지구 동측이 임야지역이므로 동·식물상은 500m이상 조사하되, 현황조사 시 동·식물의 활발한 활동·출현 시기 등을 고려하여야 함.

5.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 관련법규에 따라 주민 등 의견수렴 절차를 이행하되, 주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평가 요약서를 작성·제공하여야 함.

6. 기 타

- 문헌조사 자료는 이 계획의 대상지역과 관련성이 있는 3개 이상의 최근 자료를 활용하고 출처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 청주대학교 (위원 김종우)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통보서

(대전연축지구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 전략환경영향평가)

□ 총괄 의견

- 본 평가준비서에서 설정한 평가항목은 11가지(준비서 p.55 참고)이지만, 사업지구가 공동주택용지를 포함하기 때문에 신설 공동주택의 층수가 높을 경우에는 주변에 “일조장해”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음. 이 경우에는, “일조장해”를 포함한 12가지 평가항목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준비서 p.28~29와 같이 평가항목별 범위를 3가지 항목(동식물상, 대기질, 소음진동)에 대하여 각각 0.5km, 0.5km, 0.3km로 한정하였지만, 이는 일반적으로 시행되는 개발사업의 환경영향평가에 비해 작은 범위로 생각됨. 평가항목별 범위를 결정할 때는 설정한 범위에 대한 타당성을 검증함으로써 환경저해 요소를 미연에 방지하는 노력이 필요함. 본 사업의 경우는 각종 건설장비를 가동해야 하는 개발사업으로서 인근 주민의 생활환경 피해를 야기하기 쉬우므로, 평가항목 중 대기질, 소음진동에 대해서는 범위를 각각 사업지구의 1km, 0.5km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함.
- 본 평가준비서에는 사후환경조사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음. 향후 환경영향평가서에는 사후환경조사에 대한 내용을 반드시 수록해야 함.

□ 심의 의견

1. 대상지역의 설정

- 본 사업은 각종 건설장비를 가동해야 하는 개발사업으로서 인근 주민의 생활환경 피해를 야기하기 쉬우므로, 평가항목 중 대기질, 소음진동에 대해서는 범위를 각각 사업지구의 1km, 0.5km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함.

2. 토지이용 구상안

- 본 사업부지의 토지이용 구상안은 적절한 것으로 생각됨. 단, 경부고속도로와 인접한 녹지의 폭이 적절한지는 재검토하기 바람(구체적인 내용은 “3.대안”에서 후술함).

3. 대안

- 제시한 3가지 대안(준비서 p.51 참고) 중에서 선정 예정안에 해당되는 3안이 상대적으로 적절한 것으로 생각됨. 단, 경부고속도로와 인접한 녹지의 폭이 적절한지는 재검토하기 바람. 즉, 경부고속도로에서 생기는 교통소음이 거주민에게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 정도의 녹지 폭을 충분히 확보함으로써 고속도로에 방음벽을 설치하지 않도록 계획하기 바람.

4. 평가 항목 · 범위 · 방법 등

- 평가항목 : 신설 공동주택의 층수가 높을 경우에는 “일조장해”를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함.
- 평가항목별 범위 : 평가항목 중 대기질, 소음진동은 범위를 각각 사업지구의 1km, 0.5km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함.
- 평가항목별 방법 :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시는 사업시행으로 인한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의 악영향 최소화를 위한 다각적인 예측과 적절한 저감방안의 제시가 반드시 필요함.

5.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 본 사업에 대한 주민 의견수렴절차는 반드시 시행되어야 함

6. 기 타

-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 타당성에 대한 특별한 의견은 없음.
- 공사시 소음진동이나 대기질의 악영향은 민원발생의 주원인이 되므로, 반드시 사업 수행 이전에 인근 주민에 대한 적극적인 의견수렴이 필요할 것임.
- 본 사업수행에서 절토를 위해 발파작업이 필요하다면, 소음·진동 영향에 측 방법에 발파 영향을 추가하고 주변 정온시설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2017. 8. 9.

심의위원 김 중 우



◦ 한밭대학교 (위원 장철현)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통보서

(대전 연속지구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 전략환경영향평가)

총괄의견

○ 사업시행 시 환경영향평가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하였던 상황의 발생 또는 예측의 부적정 등으로 주변 환경에 추가적인 악영향이 있거나 있을 것으로 우려될 경우에는 협의내용 외에 별도의 대책을 신속히 강구시행함으로써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예방하여야 함.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

1. 대상지역의 설정

○ 대덕구 일원(연속지구)을 대상지역으로 설정하는 것은 타당성이 있음.

2. 토지이용 구상안

○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됨.

3. 대안

○ 대안을 1,2,3 안으로 제시하여 비교(장점, 단점) 검토하여 3안이 유리한 것으로 판단한 것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4. 평가항목범위-방법 등

○ 평가범위 및 방법 설정은 주변지역을 고려하여 선정한 것으로 타당성이 있음.

- 평가항목에 대한 예측 시에는 최신자료로 활용토록 분석하여야 함.

- 환경현황조사는 각 항목별 주요 영향시기를 고려하여 조사토록 하여야 함

5.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 주민 등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여 사업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함

6. 기타

○

2017년 8월 3일

심의의원 장 철현 

- 대전환경운동연합 (위원 고은아)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통보서

대전 연속지구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 전략환경영향평가

□ 총괄의견

개발로 인한 악영향이 계족산 공원까지 확대되지 않도록 토지이용에서 완충녹지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조성 후의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도 대로변과 고속도로를 고려한 완충녹지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오랫동안 토지를 자연상태로 이용한 지역이 포함되어있어 이러한 특성이 생태계 조사에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

□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

2. 토지이용 구상안

기존의 계족산 공원과 인접해 있는 지역으로 개발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완충녹지를 통해 개발지역과 이격거리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필요한데, 공동주택용지 쪽은 완충녹지가 전혀 확보되지 않았고, 유통시설용지 쪽도 구간에 따라 완충녹지 확보가 적은 곳은 매우 취약한 상황으로 계족산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완충녹지 확보가 필요

향후 조성 후에도 주변의 대로와 고속도로로 인한 소음, 분진 등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으로 추가적인 완충녹지 확보가 필요하다.

5.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지역주민의 특성을 고려하여 충분히 정보를 제공하고 주민의견수렴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해 보임.(인근지역의 주민자치모임, 마을모임에 공지 등)

2017년 8월 1일

심의위원 고은아 

◦ 회덕동 주민 (위원 조순태)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통보서

(대전 연축지구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 전략환경영향평가)

□ 총괄의견

- 사업시행에 따른 주변 환경 및 인접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없도록 계획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

1. 대상지역의 설정

-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을 충분히 검토하여 대상지역을 설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토지이용 구상안

- 없음.

3. 대안

- 대안의 선정은 계획을 수립하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주변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에 영향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평가항목·범위·방법 등

- 평가항목·범위·방법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사업시행에 따른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없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 향후 개발사업시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기타

- 없음.

2017년 8월

심의의원

조 순 태